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87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의무교육기관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업성취도 격차 해소를 위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학교 내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 각급 학교는 등교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는 초등학교 6년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과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식·교복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필수용품인 마스크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교육감이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스크 구입 부담을 덜어 주고, 학교 내 감염 확산 및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